

2022년도 건설업 고용·산재보험료 신고·납부 주요내용

□ 주요내용

- 대상보험료 : 2021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2년도 개산보험료
- 신고·납부기한 : 2022. 3.31(목)까지 (※ 기한엄수)
- 보험료 산정 방법
 - (확정보험료) 2021년도 보수총액 × 보험료율

구 분	고용보험	산재보험
본사 보수총액	사무(내근) 직원 보수 + 본사소속 현장직원 보수	사무(내근) 직원 보수
건설일괄 보수총액	현장일용직 보수 + (외주공사비 x 30%)	본사소속 현장직원 보수 + 현장일용직 보수 + (외주공사비 x 30%) +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

- (개산보험료) 2022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× 보험료율

<p><2022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산정방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산정원칙 : 2022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 예상되는 연간 보수총액 추정액 · 건설공사 : 총공사금액 x 27% <p>※ 2022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2021년도 보수총액의 70% 이상 130% 이하인 경우 2021년도 보수총액을 2022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적용</p>

👁 보험료율

- 고용보험 : (실업급여) 1.6%* + (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) 0.25~0.85%
* 2022. 7. 1부터 1.8%로 인상
- 산재보험 : (2021년도 확정) 3.60%, (2022년도 개산) 3.60%(동결)
※ 출퇴근재해요율 0.10%, 임금채권부담금율 0.06%, 석면피해구제
분담금률 0.003%

○ 신고방법

- (인터넷)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(total.comwel.or.kr)
- (방문)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·지사
- (우편·팩스) 2022. 3.31(목) 도착분에 한함